

전자발찌 끊으면 보호관찰관이 즉각 수사

‘조두순 방지법’ 일부 국회 통과
보호관찰소에 직접 수사권 부여
조두순 출소후 법적용 받을듯

화학적 거세·2km내 접근금지 등
국회 대치로 관련법 개정 표류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 관련 일부 법안(가칭 1차)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출소 즉시 전자발찌를 부착하므로 바로 개정안을 적용받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법경찰법’을 재석 278명 중 찬성 274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하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때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자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법사위 계류 중인 ‘조두순 방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주거지역 이외 지역 출입 금지, 위반 시 벌칙 강화
-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 금지
-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2km 이내 접근 금지
- 미성년자 성폭력범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제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 선고

보호수용법 제정안

위험성이 큰 아동 성폭력범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

*자료=의안정보시스템

수 있다. 법무부도 이 개정안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반면 거주 제한이나 약물치료 내용 등을 담은 ‘조두순 방지법’ 관련 다른 법안(가칭 2차)은 조두순이 만기 출소하기 전 통과될지 촌각을 다투고 있다.

조두순 만기 출소(12월 13일)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조두순 방지법 2차 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두순 방지법 2차 법안이 만기 출소 전까지 공표되려면 늦어도 이달 안에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돼야 한다.

조두순 방지법 2차 법안은 총 8개로 이 중 5개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거세진 여론에 따른 대응책이지만 일부 법안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안 일부 개정안에는 △주거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 강화 △부착자의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 거주 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거주 2km 이내 접근 금지 △19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의 준수 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 외출 제한’ 부과 △19세 미만 사람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 반드시 이수 부과 등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거지역 이외 지

역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고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과 특정 시간 외출을 제한하는 법안은 조두순을 보호관찰하면서 적용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서 거주를 금지하는 법안과 2km 이내 접근 금지 법안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두순 방지법 2차로 발의된 성충동 약물치료와 보호 수용은 소급 적용 등 위헌 소지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 개정안에서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이 법안은 적용례를 부칙으로 달아 조두순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특정 개인을 겨냥해 부칙을 달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보호수용법은 이중 처벌·소급 적용 등이 우려돼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이 법안은 아동 성폭력범이나 재범 위험성이 큰 인물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윤예 기자